무배당수호천사 NEW 간편내가만드는 보장보험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수호천사 NEW 간편내가만드는보장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의 명칭	심사 유형
무배당수호천사 NEW 간편내가만드는보장보험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주) 다만, 간편심사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종목의 명칭에 "무배당"을 "무배당수호천사간 편"으로 대체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상품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케아취고그	30 년만기	10·15·20 년납	만 15 세~70 세		
해약환급금	90 세만기	기 만 15 세~Min(70, 85-년납)서			
미지급형 	종신	10·15·20·30 년납	만 15 세~Min(80, 100-년납)세		
	30 년만기	0 년만기 만 15 세~70 세			
표준형	90 세만기	10·15·20·30 년납	만 15 세~Min(70, 85-년납)세		
	종신		만 15 세~Min(80, 100-년납)세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나. 회사가 "가"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나.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다.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 라.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 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1)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4. 간편심사형에 관한 사항

- 가.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별점 2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 나. 회사는 간편심사형의 보험계약 체결시,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안내한 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 (별첨 2 참조)을 받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이 상품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 2)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비교 대상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나'에 의하여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보험을 비교 안내시, 일반심사보험은 간편심사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 라. 회사는 피보험자가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간편심사형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일반심사보험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 마.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간편심사형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 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 바. '마'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포함)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 사. 간편심사형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하기 쉽도록 별도의 청약서 (별첨 3 참조)를 사용한다.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첨 3)에 기재된 청약서 보다 간소화된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아. 간편심사형은 위험률을 모니터링, 검증하여 향후 경험위험률 산출을 위한 적정 경험통계가 집적된 경우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15.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다만, 간편심사 상품에 한함)

- 가. 이 상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는 상품이다.
 - ①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유효한 계약일 것
 - ②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일 것
 - ③ 전환전 계약이 간편심사형(6) 계약이 아닐 것
- ※ "무사고"의 정의 및 "무사고 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 "무사고"
 -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의 경우 최초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계약일로 한다. 이하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이라 함) 이후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 이후에 "7대질병"으로 진단되지 않고, 해당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이 없는 경우 (7대질병: 아 뇌조주 형시즈 시그겨새즈 시자파마즈 가격하즈 및 트서주이 마
 - (7대질병: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및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 "무사고 기간"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터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나. 회사는 고객의 계약전환 신청 내용(별첨 5 참조)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이 유지된다.
- 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계약전환 요건, 계약전환 절차 및 계약전환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린다.
- 라. 계약전환의 신청기한은 최초계약 체결시 가입한 간편심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최초계약 체결시	계약전환 신청기한
세글시	

가면시니하(^)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0)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9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ᄀᅜᆏᄊᆝᅕᅼᄺ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 간편심사형(1) │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나면사시하(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편시니청(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3)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 편시 나침(4)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4)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ᆚᅖᄮᆝᅯᄼᇊ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4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간편심사형(6)	무사고 계약전환 불가

- 마.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에 회사가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바.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최초계약 시 가입한 간편심사 유형 및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 =1101		전환가능계약							
최초계약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체결시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0)	(1)	(2)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1)	(2)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2)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5)	(6)								
간편심사형	무사고 계약전환 불가								
(6)	구작고 계탁인된 물기								

- 사. 계약전환이 되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전 계약" 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된다.
 - ① 보장내용

- ② 갱신/비갱신 유형
- ③ 납입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해약환급금 미지급형/표준형)
- ⑤ 간편심사 유형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아. "전환후 계약"으로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한다.
- 자. 회사는 계약전환으로 보험료 변경 및 정산금액 등을 환급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전 계약의 "무사고"의 판별 기준이 되는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 차. '자'에 따라 "전환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환급 받았던 정산금액과 이자가 추징되며, "전환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다.
- 카. 최초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된다.
- 타. 회사는 최초 계약시 계약자에게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4)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6. 표준체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다만, 간편심사 상품에 한함)

"표준체 계약전환특약"에 따라 일반심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17. 기타

가. 상품명칭 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나.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2)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 1)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를 말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가)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나)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가)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과 "다"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준: 남자, 40 세, 종신, 20 년납,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기타 특약제외]

구 분	해일	약환급금 미지급	급형		표준형	
보험료		0,000 원 0,000 원				
거미네스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경과년수	(만원)	(만원)	(%)	(만원)	(만원)	(%)
1 년						
3 년						
5 년						
10 년						
19 년						
20 년						
30 년						
60 년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 입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화면터치 및 드래그 등) 포함)하고 서명(인)하거나 음성녹음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에 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계약자 확인]

● 본인은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 히 <u>이해</u>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 간이 완료된 이후에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대비 <u>50%</u>인 <u>해약환급금 미지</u>급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u>해약환급금 미지급형</u>"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u>해약환급금이 없으며,</u>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시 표준형 대비 <u>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u> <u>저축목적으</u> 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년월일계약자(인/서명)친권자(인/서명)친권자(인/서명)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 1. 이 상품은 <u>"간편심사" 상품</u>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u>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u>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u>일반심사보</u> 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 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 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간편심사" 상품 이외에도 현재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질병을 앓은 경력이 있는 등 회사가 정한 일반심사보험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도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건부특약」,「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특별조건부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여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특약
-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특약

※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상품구분	간편심사 보험	일반심사 보험
주계약 상품명	(무)수호천사 NEW 간편내가만드는보장보험	좌 동
	간편심사형(N) ※ N=0,1,2,3,4,5,6	일반심사형
상품명	(무)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 A1 (무)소액암진단비특약 A1 (무)뇌출혈진단특약 A1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A1	좌 동
계약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을 간소화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승낙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여부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주계약 가입금액 100 만원,									
구 분		특약 가입금액 각 1,000 만원(다만, 소액암진단비특약은 200 만원),								
		종신, 20 년납]								
	나 이	남 자	여 자	나 이	남 자	여 자				
보험료	40 세	x,xxx 원	x,xxx 원	40 세	x,xxx 원	x,xxx 원				
예시	50 세	x,xxx 원	x,xxx 원	50 세	x,xxx 원	x,xxx 원				
	60 세	x,xxx 원	x,xxx 원	60 세	x,xxx 원	x,xxx 원				

- 주 1) 비교 대상 상품은 이 상품에서 계약전환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심사형으로 하며, 일반심사보험으로 가입시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 2) 상기 예시된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화면터치 및 드래그 등) 포함)하고 서명(인)하거나 음성녹음을 통해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ŀ.								
	20	년	월	일	<u> </u>	보험실	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 ● 보험설계사		<u>으(i</u>	로)부터	위 L	내용에 다	하여	설명을	들었습니	니다.
	20		⁻ 월			계약지			(인/서명)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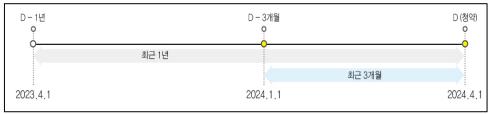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근 3 개월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 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5) 심장판막증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외부환경

- 4 번과 5 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이륜자동차(영업용)

8) 이륜자동차(자가용)

9) 건설기계

10) 농기계

-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 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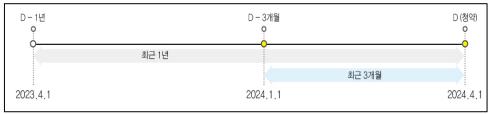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1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근 3 개월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 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1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3. <u>최근 5년 이내에</u>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니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1) 암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3) 협심증4) 심근경색증5) 심장판막증6) 간경화증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외부환경

- 4 번과 5 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보험계약 체결 당시 <u>직업</u> 또는 <u>직무</u>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u>직업</u> 또는 <u>직무</u>가 <u>변경</u>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u>불이익</u>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

- 7) 이륜자동차(영업용)
- 8) 이륜자동차(자가용)
-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 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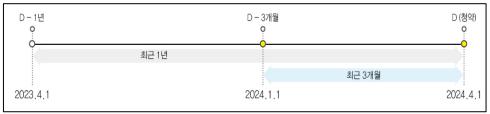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2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근 3 개월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
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2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3. <u>최근 5년 이내에</u>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니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5) 심장판막증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외부환경

- 4 번과 5 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u>직업</u> 또는 <u>직무</u>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u>직업</u> 또는 <u>직무</u>가 <u>변경</u>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

- 7) 이륜자동차(영업용)
- 8) 이륜자동차(자가용)
-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 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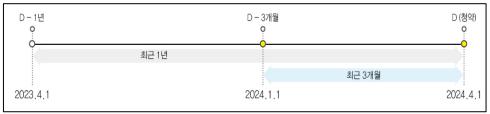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3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근 3 개월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
	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Š	되근 3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리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4 번과 5 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 보험계약 체결 당시 <u>직업</u> 또는 <u>직무</u>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2) 승용차(자가용)

4) 승합차(자가용)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지역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3) 업종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6) 간경화증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1) 승용차(영업용)

3) 승합차(영업용)

5) 심장판막증

외부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1) 근무처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

- 7) 이륜자동차(영업용)
- 8) 이륜자동차(자가용)
-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 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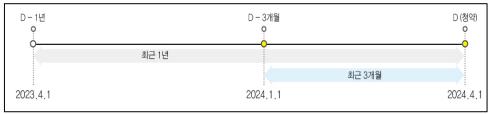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4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근 3 개월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 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4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3.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5) 심장판막증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외부환경

- 4 번과 5 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

- 7) 이륜자동차(영업용)
- 8) 이륜자동차(자가용)
-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 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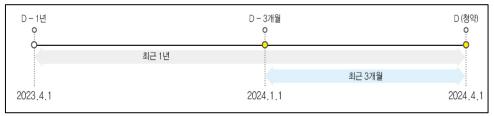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5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근 3 개월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
	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Š	되근 5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되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4 번과 5 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 보험계약 체결 당시 <u>직업</u> 또는 <u>직무</u>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2) 승용차(자가용)

4) 승합차(자가용)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지역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3) 업종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6) 간경화증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1) 승용차(영업용)

3) 승합차(영업용)

5) 심장판막증

외부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1) 근무처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

- 7) 이륜자동차(영업용)
- 8) 이륜자동차(자가용)
-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 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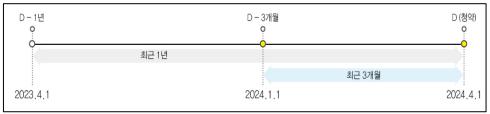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계약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6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근 3 개월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필요소견
- 2) 수술필요소견
-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4) 질병확정진단
- 5) 질병의심소견

*	여기서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
	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Ş	되근 6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되 <mark>근 5년 이내에</mark>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4 번과 5 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 보험계약 체결 당시 <u>직업</u> 또는 <u>직무</u>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2) 승용차(자가용)

4) 승합차(자가용)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지역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3) 업종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6) 간경화증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차종(,)

1) 승용차(영업용)

3) 승합차(영업용)

5) 심장판막증

외부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1) 근무처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

- 7) 이륜자동차(영업용)
- 8) 이륜자동차(자가용)
-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 십시오.

-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u>이륜자동차</u> 또는 전동킥보드 등 <u>개</u> <u>인형이동장치</u>를 포함한 <u>원동기장치 자전거</u>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사항(질문 6 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 월소득(계약자 기준)

월소득 - 월평균()만원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에 대한 계약자확인서

- 1. 이 상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 ①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유효한 계약일 것
 - ②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일 것
 - ③ 전환전 계약이 간편심사형(6) 계약이 아닐 것

※ 간편심사 유형별 보험료 예시

○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으며, "간편심사" 유형에 따라 할증 수준이 다릅니다. 보험료 수준은 할증 폭이 가장 큰 간편심사형(0)에서 간편심사형(6) 순으로 저렴해집니다.

[기준: 주계약 및 부가되는 특약, 성별, ㅇㅇ세, 보험기간, 납입기간, 월납]

구분	간편심사형						
丁正	(0)	(1)	(2)	(3)	(4)	(5)	(6)
보험료							

- ※ "무사고"의 정의 및 "무사고 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 "무사고"는 아래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의 경우 최초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계약일로 합니다. 이하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이라 함) 이후에 질병 이나 재해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 이후에 "7대질병"으로 진단되지 않고, 해당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이 없는 경우
 - (7대질병: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및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 "무사고 기간"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터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함)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의 계약전환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 3. 계약전환의 신청기한은 최초계약 체결시 가입한 간편심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체결시	계약전환 신청기한
가면사니청(O)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0)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9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면사사형(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면사사형(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면사되었(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3)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교사보형(4)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4)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면시시하(도)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 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간편심사형(5)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4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간편심사형(6)	무사고 계약전환 불가

- 4.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에 회사가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5.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최초계약 시 가입한 간 편심사 유형 및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ᇸᆠᅰᅂ	전환가능계약								
최초계약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무사고기간			
체결시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0)	(1)	(2)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1)	(2)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2)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3)	(4)	(5)	(6)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간편심사형							
(4)	(5)	(6)							

간편심사형 (5)	간편심사형 (6)							
간편심사형	무사고 계약전환 불가							
(6)			1712 11-	100 21				

- 6. 계약전환이 되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 보장내용
 - ② 갱신/비갱신 유형
 - ③ 납입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해약환급금 미지급형/표준형)
 - ⑤ 간편심사 유형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7. "전환후 계약"으로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환급하여 드립니다.
- 8. 회사는 계약전환으로 보험료 변경 및 정산금액 등을 환급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전 계약의 "무사고"의 판별 기준이 되는 사고를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9. 위에 따라 "전환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환급 받았던 정산금액과 이자가 추징되며, "전환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 최초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됩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화면터치 및 드래그 등) 포함)하고 서명(인)하거나 음성녹음을 통해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 ㅇㅇㅇ은(는) 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 무사고고객 계약전환은 신청기한 내에 <u>신청</u>한 계약자에 한해서 회사의 승낙으로 적 용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사고"의 판별 기준이 되는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전환시 알릴 의무 위반효과(전환후 계약의 무효,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액 등의 추징, 추징금 납입이후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 · 상기 가입 후 무사고고객 계약전환제도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u>이해</u>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20	년	월	일		보험실	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설계사		_ <u> </u>	로)부터	위니	내용에 디	내하여	<u>설명</u> 을	들었습니	- 다.
	20	녀	월	일		계약지	.		(인/서명)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계약전환 신청을 심사하고 계약전환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는 "전환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 "전환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 액 등의 추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1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 2.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 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5) 심장판막증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계약전환 신청을 심사하고 계약전환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환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 "전환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액 등의 추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u>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2 년 이내에</u>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 2. <u>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2년 이내에</u>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 5) 심장판막증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계약전환 신청을 심사하고 계약전환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는 "전환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 "전환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 액 등의 추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3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 2.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 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 5) 심장판막증
-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계약전환 신청을 심사하고 계약전환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는 "전환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 "전환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 액 등의 추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4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 2.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4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 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 5) 심장판막증
-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계약전환 신청을 심사하고 계약전환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는 "전환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 "전환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 액 등의 추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5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 2.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 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 5) 심장판막증
-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계약전환 신청을 심사하고 계약전환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환이 거절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전환이 적용된 후에 회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는 "전환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 "전환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정산금 액 등의 추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된 상황에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액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납입된 이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1.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6 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 2.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6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 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1) 암 2)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 3) 협심증 4) 심근경색증

- 5) 심장판막증
- 6) 간경화증 7)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년 월 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